

예산성과금운영규정 [2013. 09. 23. 규정 제 36 호]

개정 2016.03.31. 규정 제 60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절약이나 외주 수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영역확대로 수익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산절약이나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외주 수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영역확대 및 수익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산절약”이라 함은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 신공법 도입 등으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현저히 절약된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예산성과금 지급

제4조(지급요건) ① 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
2. 외주 수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영역확대 및 수익을 증대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예산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예산의 지출소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예산절약으로 차년도 이후에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예산절약으로 고객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차액,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급절차) ①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당해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원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성과금요구액, 성과금 지급계획, 성과금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개인적 노력에 의한 때에는 해당자에게, 기

여자가 다수인 때에는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7조(예산편성) ① 성과금 예산은 포상비 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연도 중에 포상비로 전용하여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외주수주로 인한 수익증대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한다.

제8조(지급시기) 예산절약, 외주수주로 인한 수익증대에 의한 성과금은 익년도 3월까지 지급한다.

제9조(사전승인) 예산절약, 외주수주로 인한 수익증대에 의한 성과금은 공사사장과 사전협의 후 지급하되,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퇴직, 사망의 경우 성과금 지급) 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시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3 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원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장이 위촉한다.

1. 공사 관련 직원 2인

2. 공인회계사, 교수, 공인연구소 책임연구원, 철도분야 전문가 또는 이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인

⑤ 내부위원은 사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 및 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제4항 제2호의 외부위원은 공사 추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의 심사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성과금의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입증대 규모의 산정

4. 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4조(심사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성과금 지급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술·공법 또는 타 기관의 성과금 지급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등

2.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개선한 내용의 자발성 여부
3. 제안제도의 채택, 다른 법령에 의해 포상금 또는 상여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4.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기여한 자의 범위를 상급자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확대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예산절약 기여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타당성
6. 회사 내부의 노력이 아닌 외부요인(사업확장, 사업조정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7.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절약액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8. 외주 수주가 1회성 여부 및 수익증대 여부
9. 그 밖의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등 창의성 여부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서면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2회 연속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

산편성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석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참석을 위하여 사전에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사 후 조 치

제18조(사후조치) 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성과금을 지급한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금 지급내역은 이사회 및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액 지급신청에 대한 특례

제19조(소액 특례) 제5조 제1항 관련 성과금 요구총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사장 결재 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제4조제3항 관련)

| 지급종류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
| 예산절약 |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 절약 | 절약된 예산의 10% 범위 내 | 1건당 1억원 한도 (1인당 2,000만원이내) |
| 외주수주로 인한 수익증대 | 외주수주로 인하여 사업영역확대 및 수익을 증대시킨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부서명 :

□ 지급신청내용

1. 예산절약(수익)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유형 | 예산액 | 실집행액 | 절약(수익)액 | 성과금요구액 |
|-----|----|-----|------|---------|--------|
| | | | | | |
| | | | | | |

※ 절약(수익)유형 : 외주 수주, 신기술 개발, 신공법 도입, 신경영 기법 도입 등을 구분 기재

2. 성과금 지급대상 (단위 : 백만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직접기여정도 | 비고 |
|----|----|----|--------|----|
| | | | | |
| | | | | |

※ 직접기여정도 : 개인별 기여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예산성과금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예산절약(수익)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직접 기여자에 관한 자료